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1, No. 118, pp.139-179
<https://doi.org/10.29212/mh.2021..118.1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의 북방 경계 인식과 ‘또 하나의 압록강’*

— ‘화주압록강’과 ‘요하압록강’의 실제 검토 —

윤경진**

1. 머리말
2. 고려초기 동북방 경계 인식과 ‘화주압록강’의 존재
3. 고려후기 서북방 경계 인식과 ‘요하압록강’의 출현
4. 맺음말

1. 머리말

영토는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그 의미는 전근대 국가에서도 다르지 않다. 영토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이

* 본 논문은 2020년 군사편찬연구소의 『군사사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軍史』誌 논문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임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수립되고 사회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역사 연구에서 영토 문제는 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영토는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고, 영토 확장은 국가의 성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였다.

다만 전근대의 경우 현재와 같이 확고한 국경을 가진 것이 아닌 데다가 영토 변화가 잦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영토 범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영토의 영유 경험은 이후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각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가급적 확대해 보려는 지향도 존재한다.¹⁾ 그런 만큼 영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비판적 안목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의해야 하는 요소의 하나가 바로 관련 지명을 파악하는 일이다. 자료에는 현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지명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증을 통해 그 위치를 비정하게 된다. 지명이 포함된 상황을 통해 유추하거나 음운 또는 자형을 통한 고증도 동원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필연적으로 연구자간의 이견을 낳을 수밖에 없고, 통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자료와 분석 방법의 개발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여지를 가진다.

이것은 비단 현대 학문에 국한된 과제는 아니다. 고대 지명에 대한 관심은 늘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생성된 기록들이 다시 현재의

1)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북 9성의 범위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동북 9성의 경계 지점으로 알려진 公嶮鎭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다는 설이 실려 있다. 실학자들이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길주 이남에 비정했으나, 일제시기 학자들이 함흥평야 일대로 비정하면서 정설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만강북설의 사실성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다. 그러나 근대 연구에서 동북 9성의 위치는 실학자들이 제시한 길주 이남이 타당하며(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鎭 立碑’ 문제」, 『역사와실학』 61, 2016①), 두만강 북설은 고려말 영토 확장에 따른 영토의식의 확대와 조선초기로 이어지는 女眞 招諭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지적되었다. 이 때 ‘두만강 북쪽 700리’는 초유 대상인 韓都里的 원주지를 매개로 설정된 것이었다(윤경진,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鎭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한국문화』 88, 2019).

연구 자료가 되었다. 이것은 후대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혼선과 오류를 불러오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지명 이해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난점은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것이 내용상 명확히 구분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같은 곳을 다른 곳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곳을 같은 곳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토의 상황,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수립되는 역사상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鴨綠江이 대표적 사례이다.

압록강은 두만강과 함께 우리나라 국경을 구성하는 근간이다. 반도에 위치한 탓에 우리 역사에서 국경과 영토 문제는 북방에 집중되었다. 삼국의 각축 과정에서 야기된 각각의 국경 변화를 논외로 한다면, 우리 역사의 북방 경계가 어디까지였는가 하는 것은 전통시대부터 지금까지 학계와 사회 일반의 관심사였다. 이 중 압록강은 서북방 경계 인식의 준거였다.

그런데 자료상 압록강이 현 압록강(구분을 위해 '의주압록강'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제시된 사례나 현 압록강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을 가진 사례가 발견된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압록강을 매개로 형성되는 국경과 영토의 내용이 달라진다.

기록에 보이는 압록강 중에서 의주압록강으로 보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로는 『고려사』 성종 10년(991) 기사인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가 있다. 현 압록강을 기준으로 보면 고려가 ‘압록강’밖의 여진을 다시 ‘백두산 밖’으로 축출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사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압록강 ‘밖’을 ‘안’으로 고치거나 이를 東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²⁾

2) 김상기는 『遼史』에 “鴨綠江女眞”이라는 표현이 보이는 것을 준거로 “鴨綠江外”의

이러한 단순한 보정이나 해석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당시 고려는 박천강 일대에 진출한 수준이었고 이후 거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비로소 강동 6주를 건설하였다. 평안도 내륙 방면의 여진을 백두산 쪽으로 축출하는 구도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 압록강이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東北面 국경 지역에 있다고 보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린다(당시 국경이 화주 지역이므로 이하 ‘화주압록강’으로 부르기로 한다). 압록강-여진-백두산의 공간 배치가 기사와 명확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려초기 압록강 사례 중에는 화주압록강으로 보아야 그 내용이 온전히 이해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이는 화주압록강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압록강을 현 압록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제시한 기록도 보인다. 『三國遺事』에는 불교의 고구려 전래를 다룬 항목에서 “遼水一名鴨淥”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자료에 보이는 압록강 중에는 요수, 곧 요하를 가리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이하 ‘요하압록강’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에 이 기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고려전기 국경을 형성한 압록강이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요하라는 주장도

‘外’가 “白頭山外”에 첨가된 衍文으로 보고, 압록강 동편 중상류 지역의 여진을 구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金岸基, 「丹寇와의 抗爭」, 『國史上的 諸問題』 2, 1959, 109쪽, 주6)). 박현서는 이를 받아들여 ‘압록강 밖’을 압록강 東岸으로 제시하였다(朴賢緒, 「貴族政權의 對外政策 :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261쪽). 그러나 연문이라는 것은 의주압록강에 맞추어 해석한 것일 뿐이고, 당시 고려의 상황에서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여진을 구축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 고려에게 압록강 동안은 ‘江內’에 해당하므로 ‘江外’를 東岸으로 해석할 수 없다. ‘江內’의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권25, 元宗 3년 9월 戊辰, “此物 小國鴨綠江內 本非所產 惟上朝漢兒土中 貫傳而來”

『高麗史』 권29, 忠烈王 5년 6월 癸卯, “都評議使 據聖旨 請於瀋州 遼陽間 置伊里干 徙諸道富民二百戶 居之 又於鴨綠江內 置伊里干二所 所各一百戶 以供朝聘役使從之”

등장하였다.³⁾

그러나 이 기사는 고구려의 도읍이 安市城이라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기사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해당 입론에 연동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많은 요소들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출발점은 역시 『삼국유사』 기사의 성격을 검증하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사실로 확정하고 원용하기 전에 이 기사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요하압록강의 실체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를 압록강 일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따르는 실증적 논리적 위험도 걸러낼 수 있다.

압록강은 우리 역사에서 국경으로서 가지는 의미가 각별하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로 '또 하나의 압록강'이 상정되고 있다. 그 만큼 이에 대한 이해가 가지는 중요성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먼저 2장에서는 동북면에 있는 화주압록강의 존재를 확인할 것이다. 그동안 『고려사』의 압록강 사례를 모두 의주압록강으로 보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이해한 것을 비판하고, 앞서 언급한 성종 10년 기사를 비롯해 화주압록강으로 보아야 하는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3장에서는 요하압록강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주장이 가지는 담론적 문제는 이미 포괄적으로 지적되었으므로⁴⁾ 여기서는 그 근거가 된 『삼국유사』 기사에 대한 실증적 이해에 초점을 둘 것이다. 해당 입론이 압록강 문제와 관련하여 당연히 입증해야 할 많은 요소들을

3) 윤한택 외, 『압록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뒤이어 중국 자료들을 통해 14세기 이전 압록강이 요하임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남의현, 「중국의 中朝邊界史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 : 중조변계사에 대한 비판과 14세기 이전 '鴨綠水[鴨綠江]'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강원대)』 57, 2018). 여기에 제시된 논거들에 대해서는 따로 비판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4) 정요근,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내일을 여는 역사』 70, 2018.

비켜간 것도 비판을 면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근거한 자료의 실증적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면, 이를 자료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고려초기 동북방 경계 인식과 ‘화주압록강’의 존재

고려는 통일을 전후해 鐵關을 넘어 동북방 개척에 나섰다. 광종 말까지 크게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이 시기 고려는 서북방에서 청천강 상류를 넘어 박천강 동쪽을 경략하는 데 주력하였다. 태조 말에서 광종 초에 걸쳐 이 지역에 州鎮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광종 말에 비로소 박천강을 넘어 嘉州와 松城을 쌓았다.⁵⁾

이에 수반하여 고려는 영유 범위를 새롭게 설정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이 압록강이었다. 崔承老는 시무 28조에서 국방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려의 영토 범위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태조가 정한 馬歇灘이었고, 다른 하나는 大朝가 정한 鴨江(압록강) 石城이었다.⁶⁾ 마혈탄은 광종 초까지 고려가 개척한 범위에 조응한다는 점에서 박천강으로 파악되며, 大朝는 당시 고려가 사대하던 宋을 가리킨다.⁷⁾

고려는 광종 13년(962) 처음으로 송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친

5) 嘉州의 축성 시점은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근래 분석에 따르면 광종 24년으로 파악된다(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 『高麗史』 地理志 北界 州鎮 연혁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010①, 280-282쪽).

6)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夫以馬歇灘爲界 太祖之志也 鴨江邊石城爲界 大朝之所定也 乞將此兩處 斷於宸衷 擇要害 以定疆域”

7)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2017, 126-127쪽.

데⁸⁾ 이어 이듬해 말부터 송의 연호를 채용하였다.⁹⁾ 이 과정에서 양국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곧 압록강이었다.

당시 송이나 고려는 모두 압록강까지 진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거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경계 설정은 양국의 접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대 외교 수립에 수반하여 고려의 영유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송의 우선적 목표는 거란에게 할양된 연운 16주를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唐이 영유했던 요동 지역의 확보까지 지향할 것이다. 이에 자신에 사대하는 고려와의 경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이다.

광종이 기존 경계였던 박천강을 넘어 북방 개척을 재개한 것은 바로 이 합의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는 당이 백제 공멸 후 신라의 영유 범위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성덕왕 때 溟江(대동강) 이남을 공인하였고, 이에 신라가 기존 경계였던 예성강을 넘어 대동강까지 개척을 진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동북방 개척도 다시 진행되었다. 광종 24년(973) 文州 북쪽에 高州(고원)와 和州(영흥)가 차례로 설치되었다.¹⁰⁾ 여기에서도 서북방처럼 고려가 영유할 범위와 경계가 설정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기사가 주목된다.

- 가) ① 刑官御事 李謙宜에게 명하여 鴨綠江 연안에 성을 쌓아 關城으로 삼으려는데, 여진이 병사로 막아서고 謙宜를 잡아 돌아갔다. 군대가 궤멸되어 성을 쌓지 못하였고, 돌아온 자가 3분의 1이었다.¹¹⁾
- ② 鴨綠江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아 살게 하였다.¹²⁾

8) 『高麗史』 권2, 光宗 13년, “冬 遣廣評侍郎李與祐等 如宋 獻方物”

9) 『高麗史』 권2, 光宗 14년 12월, “行宋年號”

10) 윤경진, 「고려 성종-현종조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역사문화연구』 38, 2011.

11) 『高麗史』 권3, 成宗 3년, “命刑官御事李謙宜 城鴨綠江岸 以爲關城 女眞以兵遏之 虜謙宜而去 軍潰不克城 還者三之一”

12) 『高麗史』 권3, 成宗 10년, “逐鴨綠江外女眞於白頭山外 居之”

①은 성종 3년(984) 기사로서 고려가 압록강 연안에 축성하려다가 여진의 방해로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②는 성종 10년(991)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구축한 내용이다. 공통적으로 ‘압록강’과 ‘여진’이 등장한다. 관성 축조 시도는 압록강이 경계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여진 축출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두 기사에 보이는 압록강은 현재의 압록강, 곧 의주압록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다시 말해 ‘압록강’의 실체에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의주압록강으로 보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난점이 생긴다.

우선 고려는 성종 13년(994) 거란의 1차 침입 당시까지도 광종 말에 개척한 박천강 인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것은 당시 거란의 영토 할양 요구에 대해 徐熙가 “실제 거란이 의도한 것은 嘉州와 松城에 불과하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¹⁴⁾

당시 주요 전투 또한 박천강 주변에서 전개되었다.¹⁵⁾ 다음 기사도 성종 초 고려의 북방 경계와 관련된 이해를 제공한다.

13) 최근까지도 이 기사를 근거로 고려가 압록강 방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李貞信, 「江東6州와 尹耀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軍史』 58, 2003, 282쪽;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248쪽;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の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24, 2008, 10-11쪽).

14) 이 내용은 태조가 정했다는 경계가 거란과의 외교적 합의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소손녕은 고구려 구지 전체를 대상으로 잠식을 주장했지만, 양국이 합의했던 경계는 박천강이었기 때문에 서희는 두 성만 문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15) 당시 고려의 전방 기지는 安北府였고, 선봉군이 거란군과 첫 전투를 벌인 蓬山郡은 泰州(태천)에, 소손녕이 공격한 安戎鎭은 거주 인근의 松城에 각각 비정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0①, 278-279쪽 및 282-283쪽).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安州 서쪽 해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안용진은 몽골 침입 때 海島에 入保했다가 出陸 후 僑寓하던 지역이다(윤경진, 「고려 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②, 138-140쪽).

나) 지난 겨울에 (여진이) 다시 木契를 보내와 거란 병사가 그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本國은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곧바로 구원하지 않았는데, 거란이 과연 이르러 殺掠한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머지 무리는 도망쳐 본국의 懷昌·威化·光化 지경으로 들어오니 거란 병사가 쫓아와 잡았습니다.¹⁶⁾

위의 기사는 성종 4년(985) 고려에 온 송의 사신 韓國華에게 성종이 한 말 중 일부이다. 앞서 여진이 거란의 침구를 받아 고려의 경내로 진입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懷昌·威化·光化는 각각 博州·雲州·秦州가 州로 성립하기 이전의 鎭 명칭이다.¹⁷⁾ 이들은 모두 박천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기사는 성종 초 고려의 서북방 영토가 박천강을 경계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강 건너의 거주 지역을 확보한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압록강 연안까지 바로 올라가서 關城 축조를 도모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관성은 단지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거주와 압록강 사이의 거리를 감안할 때 압록강 방면의 관성 축조를 상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여진이 산재하며 길을 막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거란과 강화 협상 당시 서희가 압록강 내외를 여진이 차지하여 길이 막혀 있다고 말한 것, 그리고 협상 결과로 이 지역에 강동 6주를 설치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②의 상황은 문제가 더욱 뚜렷하다. 고려가 '압록강 밖'의 여진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압록강 밖의 여진을 다시 '백두산 밖'으로 구축한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압록강과 백두산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구도는 나올 수 없다. 이것은 압록강이

16) 『高麗史』 권3, 成宗 4년 5월, “前冬 再馳木契 言契丹兵將至其境 本國猶疑虛偽 未即救援 契丹果至 殺掠甚衆 餘族遁逃 入于本國懷昌威化光化之境 契丹兵追捕”

17) 윤경진, 앞의 논문, 2010①.

이 중 懷昌은 德昌의 오기로 파악된다.

백두산 안쪽에 있고 그 사이에 여진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그래야 고려가 남쪽에서 이들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이에 밀린 여진이 백두산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압록강은 의주압록강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함경도 지역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문제가 명백함에도 기존 연구에서 한결같이 의주압록강으로 본 것은 실체가 분명한 고유 지명이기에 처음부터 또다른 압록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공간 구성이나 고려의 강역을 고려할 때 현 압록강으로는 기사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만큼, 동북방에 또 하나의 압록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고려초기 기록에 보이는 鴨綠江(鴨江) 용례 중 다수가 화주압록강으로 파악될 여지를 가진다. 아래에서는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한다.

압록강이 『고려사』 기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전술한 성종 원년(982)의 최승로 상서이다.¹⁸⁾ 여기서 최승로는 마혈탄과 압강을 준거로 고려의 경계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으므로 이들은 같은 방향에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先代에 박천강과 의주압록강 등 두 개의 경계 지표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경계를 선택하고 그에 맞추어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성종 12년(993) 서희가 소손녕과 강화 협상을 벌일 때에도 압록강이 등장한다. 당시 서희는 거란이 고구려 땅을 영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내세우며 “압록강 內外가 모두 고려의 경내인데 여진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 朝聘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¹⁹⁾

18) 태조 즉위전 사적으로 나오는 王昌瑾의 銅鏡 명문의 “先探雞後搏鴨”을 “先得雞林後收鴨綠之意”라고 해석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鴨江의 첫 사례로 채용하기 어렵다.

19)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且鴨綠江內外 亦我境內 今女眞盜據其間 頑黠變詐 道途梗澁 甚於涉海 朝聘之不通 女眞之故也”

그리고 협상이 타결되어 거란과 고려가 각각 압록강을 경계로 축성을 진행하였다. 거란은 鴨江 西리에 5개 성을 쌓은 뒤 고려에게 안북부에서 압강의 동쪽에 이르는 280리에 축성하고 그 수를 통보하라고 알려왔다. 이로써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거란과 맞닿게 되었다.²⁰⁾ 안북부에서 280리 지점에 있는 이 압록강은 물론 의주압록강이다.

한편 『遼史』에도 이른 시기에 압록강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곧 거란 太祖 9년(915)에 압록강에서 낚시를 한 기사가 보인다.²¹⁾ 太宗 會同 3년(930)에는 압록강의 여진이 來朝한 기사도 보인다.²²⁾ 그리고 聖宗 統和 11년(993) 고려에게 압록강 동쪽 수백 리의 땅을 사여한 기사가 있는데,²³⁾ 이는 앞서 언급한 안북부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280리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의주압록강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발견된다. 우선 다음 기사를 보자.

다) 李承乾을 鴨江渡勾當使로 삼았다. 얼마 후 河拱辰을 보내 대신케 하였다.²⁴⁾

위 기사에 보이는 鴨江渡는 다른 기록에서는 鴨綠渡로 나와²⁵⁾ 압록강 건널목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개 동년 3월에 있었던

20) 『高麗史』 권3, 成宗 13년 2월, “遂與彼國相議 便於要衝路陌 創築城池者 尋准宣命 自便斟酌 擬於鴨江西里 創築五城 取三月初 擬到築城處 下手修築 伏請 大王預先 指揮 從安北府 至鴨江東 計二百八十里 踏行穩便田地 酌量地里遠近 并令築城 發遣役夫 同時下手 其合築城數 早與回報”

21) 『遼史』 권1, 太祖 9년 10월 戊申, “鉤魚於鴨淥江”

22) 『遼史』 권4, 太宗 會同 3년 2월 乙卯, “鴨淥江女直遣使來覲”

23) 『遼史』 권13, 本紀13 聖宗 統和 11년 정월, “高麗王治遣朴良柔奉表請罪 詔取女直 鴨淥江東數百里地賜之”

24) 『高麗史』 권3, 成宗 13년, “以李承乾 爲鴨江渡勾當使 尋遣河拱辰 代之”

25)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勾當, “成宗十三年 置鴨綠渡勾當使 後諸津渡 皆有勾當”

거란과의 경계 획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압록강을 경계로 삼았으므로 그 통로에 압강도가 설치되고 구당사가 파견되는 것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강동 6주는 한꺼번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 성종 13년에는 郭州와 龜州가 먼저 설치되었다. 이들은 압록강으로 가는 해안 경로와 내륙 경로 각각에서 남쪽에 위치한다. 귀주에서 압록강으로 가는 관문인 興化鎭은 이듬해에 설치되었다. 그 사이 협상 때 말한 바와 같이 여진 축출이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흥화진이 설치되기 전, 다시 말해 길을 뚫기도 전에 먼저 압록강에 구당사가 파견되었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²⁶⁾

그렇다면 위의 압강도는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화주압록강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양국의 경계 획정과 함께 서북방에는 강동 6주가 설치되지만, 동북방에서는 추가 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성종 10년에 여진 축출이 있었으므로 그 기준이 되는 경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 또한 필요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동북방은 추가 개척이 아니라 현상 유지 상황이었던 것이다.

압강도구당사는 이러한 조건에서 고려가 주도적으로 동북방 여진과의 통로를 장악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장성 건설 이전까지 실질적인 국경 관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종 3년의 관성 설치 시도와 연결된다.

다음 기사는 구당사가 설치된 압록강이 화주압록강이라는 이해를 뒷받침한다.

라) 尙書左司郎中 河拱辰과 和州防禦郎中 柳宗을 遠島에 유배하였다.

拱辰은 일찍이 동여진을 쳤다가 패배했는데, 宗이 이를 한스러워

26) 당시 경계 획정은 거란이 주도한 것이었다. 압록강을 경계로 삼더라도 그 건널목은 거란이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뒤에 거란이 압록강 동안에 保州를 설치한 것에서 그 사정을 읽을 수 있다.

하였다. 마침 여진 95인이 내조하여 和州館에 이르자 宗이 모 두 죽었기 때문에 연좌되어 유배된 것이다.²⁷⁾

위 기사는 현종 원년(1010) 河拱辰과 柳宗을 유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앞서 내조하는 동여진 무리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진이 거란에 강조의 목종 시해 사실을 알리면서 거란이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기사 중에 등장하는 和州館은 화주에 설치된 숙소로서 고려에 왕래하는 여진이 묵는 곳이다.²⁸⁾ 유종은 화주의 지방관으로서 화주관에 이른 여진인들을 살해하였다. 그런데 중앙에 있던 하공진이 함께 처벌되는 것은 유종의 행위가 앞서 하공진의 동여진 공격 및 패배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은 하공진 열전에도 보인다.

마) 拱辰이 일찍이 東西界에 있었는데, 함부로 군대를 동원하여 동여진 부락을 공격했다가 패배하였다. 현종 초 연좌되어 遠島에 유배되었다가 곧바로 소환되어 복직하였다.²⁹⁾

위 기사는 목종 말년 기사에 이어지지만, 내용상 현종 초의 처벌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그의 發兵 시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문제가 된 유종의 행위에 하공진이 단서를 제공한 것이어서 소급 연좌된 것이다.

27) 『高麗史』 권4, 顯宗 원년 5월 甲申, “流尙書左司郎中河拱辰 和州防禦郎中柳宗于 遠島 拱辰嘗擊東女眞見敗 宗恨之 會女眞九十五人來朝 至和州館 宗盡殺之 故並坐流”

28) 태조는 동왕 14년 北蕃 사람들이 경유하는 州鎮의 성밖에 館을 두어 대우하게 했는데(『高麗史』 권2, 太祖 14년, “是歲 詔有司曰 北蕃之人 人面獸心 飢來飽去 見利忘恥 今雖服事 向背無常 宜令所過州鎮 築館城外 待之”), 화주관도 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이해된다.

29) 『高麗史』 권94, 列傳7 河拱辰, “拱辰嘗在東西界 擅發兵入東女眞部落見敗 顯宗初 坐流遠島 尋召還復職”

그가 동여진을 공격했다는 것은 동북면 최전선 지역에 부임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의 공격이 압강도구당사로 재임할 때의 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그는 구당사 부임 이후 목종 12년(1009) 강조의 정변까지 10여 년 간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진을 공격할 수 있는 변경 지역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개연성이 높다.

실상 의주압록강 방면은 영토 개척의 의미가 컸고, 이후에도 양국 사신의 통교 외에 인적 교류는 별로 없었다. 하지만 동북방에서는 여진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었는데, 이는 和州館의 존재에서 쉽게 유추된다. 따라서 경계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강을 경계로 할 경우 津渡가 그 역할을 하며, 중요도가 높은 진도를 관리하기 위해 구당사가 파견되었다.

이 점에서 하공진이 부임한 압강도는 화주압록강에 설치된 관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압강도는 성종 3년 축조를 도모했던 關城의 기능을 대신하며, 장성 축조와 함께 定州關이 설치되기 전까지 관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³⁰⁾ 여기에는 응당 수비군이 주둔할 것인데, 하공진은 이 군대를 이용하여 동여진을 공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상충되는 자료도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 바) 그 때 陪臣 徐熙가 경계를 관장하여 가서 관리하고 留守 遼寧이 宣旨를 받들어 상의하여 각기 양국의 경계를 담당하여 여러 성을 나누어 쌓았습니다. 이 때문에 河拱辰을 鴈門에 보내어 鴨綠에 勾當使를 삼고 낮에는 나가서 동쪽 연안을 감독하고 밤에는 內城에 들어와 묵었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위력에 힘입어 도적을 점차 제거했는데, 이후로 방비가 없어 변방의 상황이

30) 關은 국경의 관문을, 館은 숙소를 나타내지만, 변경에서는 사절의 통과와 유숙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닌다.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聖宗의 글씨가 먹물이 마르지 않았고 太后의 자애로운 말씀이 어제 같습니다.³¹⁾

위의 기사는 선종 5년(1088) 거란에 樵場 혁파를 요청하며 보낸 표문의 일부이다.³²⁾ 이 글에서 고려는 압록강 동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그 근거 사적을 열거하였다.

우선 성종 때 서희와 소손녕의 협상에 따라 압록강을 경계로 두 나라가 城堡를 축조한 사적을 말하였고, 이어 하공진의 활동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공진이 구당사로 임명된 압강은 의주압록강이 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내용과 배치된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내용을 문맥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위의 글은 양국의 성보 구축과 함께 하공진이 구당사로 임명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협상 결과로 구당사가 설치되고 하공진이 임명된 맥락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승건이 먼저 임명되었고 뒤에 하공진으로 교체된 것이어서 맥락이 다르다.

다음에 낮에는 강변을 관리하고 밤에 內城에 들어온다고 한 것도 불합리하다. 압강도구당사의 활동이 강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하루사이에 오가기 위해서는 내성이 강에 인접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수비를 위해 일정한 군사력이 주둔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이승건이 처음 압강도구당사가 된 것은 성종 13년의 일이고, 홍화진은 성종 14년에 비로소 설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주압록강 인근에 구당사가 활동할 수 있는 內城이 있었

31) 『高麗史』 권10, 宣宗 5년 9월, “于時 陪臣徐熙 掌界而管臨 留守遜寧 奉宣而商議 各當兩境 分築諸城 是故 遣河拱辰於鴈門 爲勾當使於鴨綠 晝則出監於東溪 夜則入宿於內城 遂仗天威 漸祛草竊 後來無備 邊候益閑 聖宗之勅墨未乾 太后之慈言如昨”

32) 당시 樵場을 둘러싼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지, 「고려 宣宗代 樵場 문제와 對遼 관계」, 『韓國史學報』 14, 2003 참조.

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鴈門은 關門을 나타내는데, 이는 실제 압록강을 두고 양국이 교섭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고려는 물론 거란의 축성도 아직 압록강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문’을 설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외교적 수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영토와 관련된 외교 논의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련 사적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고려가 동북 9성을 개척할 때 거란에 보낸 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사) 여진 弓漢里는 곧 우리의 舊地이니 그 주민 또한 우리의 編氓입니다. 근래 변경의 침구가 그치지 않기에 수복하여 그 성을 쌓았습니다.³³⁾

위에서 弓漢里(吉州)를 언급한 것은 고려의 羈糜州를 설치한 사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며,³⁴⁾ 동북 9성의 북쪽 경계가 길주였던 것과도 관련된다.³⁵⁾ 고려는 이에 맞추어 해당 지역이 처음부터 고려의 영토였던 것처럼 표방하고, 이를 통해 동북 9성 개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실제 당시 거란은 자신에 네조한 여진 주장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해 고려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있었다.³⁶⁾

한편 고려말 明이 鐵嶺衛 설치를 통보하자 고려는 표문을 보내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 글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

33) 『高麗史』 권96, 列傳9 金仁存, “女眞弓漢里 乃我舊地 其居民 亦我編氓 近來 寇邊不已 故收復而築其城”

34) 김순자,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현실』 83, 2012, 56-57쪽.

35) 윤경진, 앞의 논문, 2016①.

36) 『高麗史』 권96, 列傳9 金仁存, “弓漢里酋長 多受契丹官職者 故契丹以我爲妄言”

아) 鐵嶺 이북을 살펴보니 文州·高州·和州·定州·咸州 등과 公嶮鎭에 이르기까지 예전부터 本國의 땅에 속했습니다.³⁷⁾

위에서 文州·高州·和州·定州는 趙暉의 반란으로 몽골에 몰입된 지역이고, 함주와 공험진은 동북 9성이 설치된 지역이다. 표문에서는 위 내용에 이어 예종 때 여진이 침구하여 함주 이북을 탈취하자 고려가 정벌하여 수복한 사적과 조휘의 반란이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여진에게 환부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 결국 새로 개척했고 이미 고려 영토에서 벗어나 있던 동북 9성을 고려의 고유 영토로 확정하고 논지를 편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려는 쌍성총관부 지역은 물론 이후 자신이 개척한 지역까지 온전히 확보할 역사적 명분을 마련하였다.

선종 5년의 표문(자료 바) 역시 압록강 동안의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다르지 않다. 압록강까지 고려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역사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이에 하공진의 사적을 채용하였다. 곧 명칭의 동일함을 이용하여 동북면의 화주 압록강에서 있었던 활동을 의주압록강으로 치환하여 구성한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거란에 하공진 사적을 제시한 배경이다. 서희는 소손녕과 협상을 벌였으므로 거란에서도 인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하공진의 임명은 고려 내부의 일이다. 그럼에도 하공진을 적시한 것은 그가 2차 전쟁 때 협상에 나섰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순절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그는 거란이 인지하고 있던 인물인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그의 압강도구당사 임용을 압록강 이동의 영유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³⁸⁾

37)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禰 14년 2월, “切照鐵嶺池北 歷文高和定咸等諸州 以至公嶮鎭 自來係是本國之地”

38) 이 시기 고려 조정이 과거의 화주압록강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공진 사적에 나오는 압록강을 의주압록강으로 오인했을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하공진의 구당사 재임을 의주압록강에 투영하면서 그의 행적에 대한 서술에도 변형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열전 기록에 보이는 “東西界”에서 발견된다. 『고려사절요』에는 이 부분이 “東西兩界”로 수정되어 있다. 이로 보면 그가 서북면에 재임한 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구문은 동여진 공격의 조건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북면이 언급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적에 두 개의 공간이 제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려사절요』는 ‘在’를 ‘從事’로 바꾸었는데, 이는 “東西界”를 “東西兩界”로 볼 경우 문맥이 ‘在’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단순한 오기로 보기도 어렵다. 『고려사절요』가 이를 “東西兩界”로 적었다는 것은 하공진의 사적에 ‘東’과 ‘西’ 모두가 걸려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열전 기사는 명백히 ‘東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에 대해 ‘西’를 넣은 것은 선종 5년 표문에 언급된 사적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자료는 내용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양자를 별개로 보았다면 열전에서 분리해 정리했을 것이다. 결국 하공진의 활동은 하나인데 그 지역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자 이를 “東西界” 내지 “東西兩界”로 포괄시킨 것이다. 여기서 실제 하공진이 활동한 곳은 ‘東’이 분명하므로 ‘西’는 이로부터 파생된 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공진이 압강도구당사로 활동했다는 사적은 처음부터 고려가 압록강까지 확보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당시 문제가 된 각장은 흥화진을 경유하는 장성과 압록강 사이의 공백지에 설치되었다. 6성의 설치만으로는 이 공백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화주압록강을 의주압록강으로 바꾸어 압록강변까지 고려가 처음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선종 5년 표문을 근거로 하공진이 활동한 압록강을 의주압록강으로 볼 수는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려초기에는 서북면과 동북면에 모두 압록강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고대에 같은 이름의 강이 여러 지역에서 출현하는 사례가 없지 않으므로 同名異處라고 보면 간단하다. 그러나 의주압록강은 이전부터 중국 자료에도 등장하며³⁹⁾ 이후 뚜렷한 존재를 보이는 반면, 화주압록강은 현종대 이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주압록강의 출현 자체가 어떤 역사적 배경 내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압록강이 고려 영토의 북방 한계를 표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는 송과 압록강 석성을 경계로 설정하였다. 고려는 고구려계승의식에 기반하여 북방 개척을 추진했지만, 그렇다고 중국 왕조가 자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던 요동 지역까지 진출을 천명할 수는 없었다. 송에 사대하며 고려는 압록강까지의 개척과 영유를 보장받았고, 이에 광종 말부터 북방 개척을 재개하였다.⁴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시기 동북방에서도 개척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축성이 재개되는 데에는 그것을 촉발한 계기와 더불어 개척의 목표점이 상정되는데, 그 목표점이 바로 압록강이었다. 고려는 박천강을 넘어 압록강 방면으로 축성을 진행하는 한편, 동북방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그 경계가 된 강을 ‘압록강’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압록강이 있게 되면서 양자를 혼동하는 사태도 발견된다. 『三國遺事』의 高句麗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보인다.

39) 『隋書』 권59, 列傳24 於仲文, “仲文回擊 大破之 至鴨綠水 高麗將乙支文德詐降 來入其營”

40) 당초 압록강은 고려의 영토 밖이었고 초기 용례는 대개 외교에 관련된 기사에 나온다. 따라서 압록강은 당초 고려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지명이 아니라 宋遼와의 관계 속에 채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맥락에서 고려는 동북방에도 경계로서 압록강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자) 고구려는 곧 卒本扶餘이다. 혹은 지금의 和州라고 하고 또 成州라고도 하는데 모두 잘못이다. 卒本州는 요동 경계에 있다.⁴¹⁾

위 기사는 고구려가 처음 건국된 卒本에 대한 고증으로서 和州와 成州로 비정하는 견해를 소개 비판하고 있다. 이 중 화주에 비정하는 견해는 전술한 화주압록강 때문에 생성된 것이다. 졸본은 압록강가에 있는데, 이 압록강을 화주압록강으로 이해하면 졸본이 화주에 있게 된다. 이는 화주압록강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음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화주압록강은 어디에 비정할 수 있을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화주에 인접한 龍興江이다. 앞서 인용한 『삼국유사』 기록은 그 단서를 제공한다. 졸본을 성주에 비정하는 것은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沸流水 松讓과 경쟁한 것, 그리고 성주가 본래 松讓의 故都라고 한 연혁 내용과 연결된다. 이것은 동명왕의 창업지를 평양으로 해석한 후대의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단지 沸流水 가에 초가를 짓고 지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다”⁴²⁾라고 되어 있다. 주몽의 창업지인 졸본을 압록강가로 보면 이 비류수는 곧 압록강이 된다. 비류왕 송양이 근거지로 전승된 성주에도 沸流江이 있으며, 그 異稱이 卒本川이다.⁴³⁾ 사적 구성에 맞추어 비류강(졸본천)이 설정되었거나 비류강을 이용하여 사적을 만든 것이다.

결국 비류수(강)는 주몽의 건국지로서 압록강의 또다른 이름이 되는데, 화주에도 沸流水가 있다. 이 강은 용흥강의 한 지류이다.⁴⁴⁾ 여기서 비류수 내지 그 하류인 용흥강이 바로 (화주)압록강으로

41) 『三國遺事』 권1, 紀異 高句麗, “高句麗 卽卒本扶餘也 或云今和州 又成州等 皆誤矣 卒本州在遼東界”

42) 『三國史記』 권13, 高句麗本紀1 始祖 東明聖王

4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成川都護府 山川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8, 咸鏡道 永興大都護府 山川

칭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⁴⁵⁾

이처럼 고려는 광종대 송과 외교를 전개하면서 ‘압록강’까지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이것이 동북방에도 적용되어 (화주)압록강이 설정되었다. 이를 준거로 광종 말 고려는 화주까지 개척을 진행하였고, 성종대에는 그 외곽의 여진을 축출하였다. 이 화주압록강은 화주 인근의 비류수 내지 그 하류인 용흥강으로 비정되며, 성종대 이후 진행된 동북방의 축성은 기본적으로 화주압록강을 관방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후 고려는 국경에 장성을 쌓아 영토를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화주압록강은 장성 이남에 자리하면서 경계 지표로서 의미가 없어졌고, 결국 고려초기 자료에 일부 편린만 남긴 채 기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3. 고려후기 서북방 경계 인식과 ‘요하압록강’의 출현

고려초기 화주압록강과 함께 문제가 되는 압록강 사례는 고려후기에 등장하는 요하압록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삼국유사』의 다음 기록을 출발로 한다.

차) 살피건대, 고구려 때安市城에 도읍했는데, 일명 安丁忽이라고도 하며 遼水の 북쪽에 있다. 遼水는 鴨濼이라고도 하고[遼水一名鴨濼], 지금은 安民江이라고도 한다. 어찌 松京의 興國寺 이름이 있겠는가.⁴⁶⁾

45) 용흥강이 있는 화주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출신지이다. ‘龍興’은 이로부터 생성된 명칭이므로 고려에서 강의 명칭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이로 보아 비류수가 강의 명칭이었고 뒤에 화주를 통과하는 하류를 용흥강으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46) 『三國遺事』 권3, 興法 順道肇麗, “按 麗時都安市城 一名安丁忽 在遼水之北 遼水一名鴨濼 今云安民江 豈有松京之興國寺名”

위 기사에는 “요수는 압록이라고도 한다”는 구문이 있다. 이를 그대로 취하면 자료에 보이는 압록강이 의주압록강이 아니라 요하일 여지도 생긴다. 실제 그러한 맥락에서 논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해당 구문을 포함한 기사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맥락과 의미에 온전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順道가 고구려에 佛法을 전한 사적을 설명하면서 “肖門寺를 창건하여 順道를 두고, 또 伊弗蘭寺를 창건하여 阿道를 두니 이것이 高麗 佛法의 시초이다”⁴⁷⁾라는 『三國史』 기사를 인용하고,⁴⁸⁾ 이어 『僧傳』 기록 중 “肖門寺 今興國 伊弗蘭寺 今興福”이라고 한 내용을 비판하는 과정에 나온다. 흥국사와 흥복사는 모두 서경에 있는 사찰이다.⁴⁹⁾

여기서 『승전』은 고구려 도읍에 대해 착오를 범하고 있다. 불교가 전래될 당시 고구려 도읍은 國內城이었다. 그런데 『승전』은 이 도읍을 평양(서경)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러한 착오가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평양은 장수왕이 천도한 곳이지만, 고려는 고구려 舊都로서 동명왕이 창업한 곳으로 간주하였다. “서경은 藝祖가 창업한 땅이다”라고 하였고,⁵⁰⁾ 서경에 동명왕의 묘와 궁궐까지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평양을 고구려 창업지로 규정함으로써 그 후신으로서 고려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증한 것이다.⁵¹⁾

고려의 역사의식에서 고구려와 고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구려의 실제 국호는 ‘고려’였고, 왕건의 고려는 이를 부활시킨

47) 『三國遺事』 卷3, 興法 順道肇麗, “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高麗佛法之始”

48) 이 『三國史』는 『舊三國史』로 판단된다. 『삼국사기』에는 ‘高麗’가 ‘海東’으로 되어 있다.

49) 일연이 “松京之興國寺”라고 한 것 또한 착오가 있는 셈이다.

50) 『高麗史』 권63, 志17 禮5 吉禮小祀 雜祀 明宗 20년 10월 甲申, “遣使西都 祭藝祖廟 西都 藝祖之所興也 至今衣冠 猶在其廟 故後王 每於燃燈八關 遣大臣致祭”

51) 윤경진,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2014.

것이였다. 그 안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前高麗, 자신을 後高麗로 규정하였다. 『宋史』나 『元史』 등 중국 사서에도 高麗 항목은 朱蒙으로부터 시작한다.⁵²⁾

이처럼 고려는 고구려의 후신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평양을 주몽이 창업한 곳으로 간주하였다. 이로 인해 평양 천도 이전 도읍에서 있었던 사적을 그대로 평양으로 옮겨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소수림왕 때 창건한 두 사찰도 평양에 있다고 생각하고 평양의 대표적인 두 사찰을 그 후신으로 지목한 것이다.

일연은 소수림왕 때 고구려 도읍이 평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를 고증하는 과정에서 그도 오류를 범하였다. 곧 도읍을 안시성으로 본 것인데, 이는 그에 인접한 요수를 압록강으로 해석한 데서 유도된 것으로 보인다. 본래 국내성에 적용되는 “압록강가의 고구려 도읍”이 ‘요수=압록강’이라는 인식에 따라 요하에 인접한 안시성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는 고려가 평양을 주몽의 창업지로 규정하고 국내성의 사적을 가져온 것과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이 또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생성된 사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수=압록강’이라는 사적은 어떤 맥락에서 구성된 것일까.

고려가 전기에 국내성 사적을 평양으로 가져온 상황에서 ‘압록강가의 도읍’을 요하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 국내성 사적이 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은 고구려 도읍 사적을 자국 영토 안에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⁵³⁾ 고구려의 도읍을 안시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와 반대의 방향이다. 결국 요하압록강은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이 전기와 달라

52) 이러한 역사성은 태조 16년 後唐이 왕건을 高麗國王으로 책봉하는 글에서 “踵朱蒙啓土之禎 爲彼君長”라고 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高麗史 권2, 太祖 16년 3월 辛巳).

53) 고구려 창업 사적이 평양으로 이동하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시대 東神聖母 숭배의 연원과 의미」, 『한국문화』 93, 2021 참조.

지면서 생긴 결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고려의 북방 영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자.⁵⁴⁾ 고려는 고구려계승의식에 기반하여 건국되었으므로 고구려 고토에 대한 영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이를 수복해야 한다는 지향을 가졌고, 이에 따라 북방 개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거란과의 1차 전쟁 당시 서희가 소손녕과 강화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력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소손녕은 “고구려 땅은 거란의 차지인데 신라 땅에서 일어난 고려가 이를 잠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서희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이며, 영토로 말한다면 거란의 東京도 우리 경내에 있다”라고 반박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이 고려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거란과의 협상 타결로 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을 획정하게 되자 고토 수복의 명분을 내세운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압록강 너머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쟁의 재발을 우려한 성종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의 영토의식은 압록강을 경계로 국경을 획정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⁵⁵⁾ 고려가 압록강 연안까지 개척하고 쌓은 강동 6주는 거란 황제가 사대의 대가로 내려준다는 명분을 띠고 있었다. 요동은 물론 그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역사적 연고권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2차 전쟁 후 현종이 親朝를 이행하지 않자 거란이 강동 6주의 환수를 통보한 것도 이러한 명분에

54)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둘 사항은 ‘鵑綠’과 ‘鵑濼’을 별개의 지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濼’과 ‘綠’은 음이 같고 글자도 유사하여 혼용될 수 있다. 지명에서 이런 형태의 혼용은 흔한 일이다. 隋의 고구려 침공 때 부대 편성에 대한 기록을 보면,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는 “鵑綠水”, 乙支文德傳에는 “鵑濼水”로 나온다. 이는 기재 과정에서 양자가 혼용된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鵑綠’과 ‘鵑濼’은 동일 지명의 이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5) 거란과의 전쟁 이후 나타난 영토의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중기 고구려계승의식의 변화와 ‘句高麗」, 『역사와실학』 72, 2020① 참조.

따른 것이다.

이에 고려는 실제 확보한 압록강 경계에 맞추어 영토의식을 조정하였다. 이는 다음 자료에 잘 드러나 있다.

카) 우리나라는 箕子の 나라를 이어받아 鴨江을 경계로 삼았는데,
하물며 前太后皇帝께서 玉冊으로 은혜를 내려 분봉하신 것이
[賜茅裂壤] 또한 그 강을 경계로 하였습니다.⁵⁶⁾

위 기사는 문종 7년(1053)에 거란이 압록강 동쪽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반발하여 東京留守에 보낸 글의 일부이다. 고려는 당초 압록강을 경계로 합의했지만, 전쟁이 재개된 뒤 거란은 압록강 동안에 保州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는 압록강 연안까지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이남 지역을 지나는 長城을 쌓았다. 이후에도 고려는 지속적으로 압록강 동안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고려는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하나는 기자가 분봉받은 곳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란의 태후황제가 사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기자의 분봉지는 요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당의 溫彦博이 당 태종의 고구려 원정과 관련하여 “요동의 땅은 周가 箕子の 나라로 삼았으며, 漢의 玄菟郡입니다”⁵⁷⁾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문종 26년(1072) 송에서 고려에 보낸 글을 보면, “箕子が 봉토를 연 것은 遼左에서 비롯되었다[箕子啓封肇於遼左]”라는 구문도 보인다.⁵⁸⁾ 중국 왕조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자의 분봉지를 요동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56) 『高麗史』 권7, 文宗 9년 7월 丁巳, “當國襲箕子之國 以鴨江爲疆 矧前太后皇帝 玉冊頒恩 賜茅裂壤 亦限其江”

57) 『舊唐書』 권61, 列傳11 溫彦博, “遼東之地 周爲箕子之國 漢家之玄菟郡耳”

58) 『高麗史』 권9, 文宗 26년 6월 甲戌

실제 요동을 차지하고 있던 거란 또한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고려는 이 사적을 거란과 합의한 경계에 맞추어 변형하였다. 곧 기자 분봉지의 경계를 요하에서 압록강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압록강은 고려의 고유 영토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다음 역시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타) 또한 압록강이 모양을 이루니 鯤岑을 구획하여 한계를 삼았습니다[且鴨綠之成形 劃鯤岑而作限].⁵⁹⁾

위 기사는 朴寅亮이 지은 「上大遼皇帝告奏表」에 나오는 구문이다. 鯤岑(鯤壑)은 東國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인데, 그 구획과 한계 설정은 기자의 분봉과 연결된다. 이 때 해당 한계는 앞에 언급한 “鴨綠의 成形”을 통해 수립된다. 위에 인용한 문종 7년 기사(자료 카)와 같은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금이 거란과 북송을 차례로 공멸하여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하게 된 상황에서도 유지되었다. 고려는 거란 멸망에 편승하여 보주를 확보한 뒤, 금으로부터 이를 공인받고 금에 대한 사대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금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한 요동에 대한 영유권을 표방할 여지는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난다.

파) 高伯淑이 이르러 몰래 聖旨를 전하기를, “保州城의 땅을 고려에 귀속시키는 것을 허락하며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句麗의 本地는 遼山이 중심이고 平壤의 舊墟는 鴨綠에 한정되었는데, 여러 번 변화를 겪어 우리 祖宗에 이르러 北國에 兼并을 당하여 三韓의 分野가 침식되었는데, 비록 隣好를 강구

59) 『東文選』 권39, 上大遼皇帝告奏表

해도 옛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⁶⁰⁾

위의 기사는 인종 3년(1125) 금이 고려의 보주 확보를 인정한 데 대해 감사하면서 보낸 표문의 일부이다. 여기서 “평양의 구허는 압록에 한정되었다”라고 한 것은 고려의 고유 영토가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문종 때의 인식과 같은 맥락을 가진다. 이에 대해 “句麗의 本地는 遼山이 중심이다”라고 한 것은 요동의 고구려 사적을 자신과 분리시키는 인식을 담고 있다.⁶¹⁾

국초 이래 고구려와의 일체성에 입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고려는 숙종대 南京 설치를 전후하여 고구려와 별개의 나라로 분리하는 인식을 보였다. 기존에 고려는 前高麗(고구려)를 계승한 後高麗로서 신라와의 결합을 통해 三韓의 一統을 달성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남경 설치를 통해 고려는 신라와의 결합을 매개하지 않고 그 자신이 삼한을 일통한 나라로 자임하였다.⁶²⁾

그 결과 고구려는 고려의 출발로서 여전히 의미를 유지했지만, 고려는 고구려와의 일체성에서는 한 발 벗어나게 되었다. 고구려와 고려의 고유 영토도 그 범주를 달리하게 되었다. 위에서 句麗는 고려와 구분되는 고구려의 사적을 나타내며, 遼山은 그러한 고구려의 중심지이다. 곧 요동의 사적을 고려의 역사와 분리시킨 것이다. 이는 기자의 분봉지가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인식과 같은 맥락으로 당시 고려가 요동에 대한 영유를 표방할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한다.

그런데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러한 영토의식에 다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太祖世家 말미의 李齊賢

60) 『高麗史』 권15, 仁宗 4년 12월 癸酉, “高伯淑至 密傳聖旨 保州城地 許屬高麗 更不收復 切以句麗本地 主彼遼山 平壤舊墟 限於鴨綠 累經遷變 逮我祖宗 值北國之兼并 侵三韓之分野 雖講隣好 未歸故疆”

61) 윤경진, 앞의 논문, 2020①, 98-100쪽.

62) 윤경진, 「고려 숙종대 南京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역사』 105, 2020②.

史論에 인용된 충선왕의 언급이 주목된다. 여기서 충선왕은 거란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宋 太祖의 사적을 서술한 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하였다.

하) 우리 태조께서 즉위한 후 金傅가 아직 來賓하지 않고 甄萱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여러 번 西都에 행차하여 北鄙를 직접 순시했으니 그 뜻이 역시 東明의 舊壤을 우리의 영토로 삼으려는 것으로 분명 석권하여 차지했을 것이다. 어찌 닭을 잡고 기러기를 잡는 것[操鷄搏鴨]에 그쳤겠는가. 이로써 보건대 비록 大小의 형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二祖(송 태조와 고려 태조)의 규모와 덕량은 이른바 경우를 바꾸어도 모두 그러한 것이다.⁶³⁾

위에서 충선왕은 태조가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기 전부터 서경에 행차하고 북방을 순행한 사적을 지적하며 고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東明舊壤”이란 고구려의 옛 영토를 가리키며 “吾家靑氈”은 그곳이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의미이다. 태조는 이곳을 모두 차지하고자 했으므로 그 지향이 “操鷄搏鴨”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操鷄搏鴨”은 태조 즉위를 예언한 王昌瑾 銅鏡의 도참에 나오는 “先操雞後搏鴨”⁶⁴⁾과 같은 것으로서 신라 병합과 함께 고구려 영토의 수복을 나타내는데, 그 목표 지점을 압록강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는 거란과의 관계로 인해 고려가 자신의 역사적 연고지를 압록강으로 제한한 상황이 투영되어 있다. 곧 기자의 분봉지가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문종 때의 인식과 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선왕이 태조의 목표가 그에 그치지 않고 “동명구양”

63) 『高麗史』 권2, 태조 26년, “我太祖即位之後 金傅未賓 甄萱未虜 而屢幸西都 親巡北鄙 其意 亦以東明舊壤 爲吾家靑氈 必席卷而有之 豈止操鷄搏鴨而已哉 由是觀之 雖大小之勢不同 二祖規模德量 所謂易地皆然者也”

64) 『高麗史』 권1, 太祖 즉위전(貞明 4년 3월)

을 모두 회복하려는 것이었다고 한 것은 고려 내부에 요동이 고구려의 구지라는 인식이 재생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향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공민왕대의 東寧府 정벌이다.

거) 本國은 堯와 병립하였고, 周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봉하여 내려준 지역이 서쪽으로 遼河에 이르렀다. 대대로 강역을 지켰는데, 元朝가 一統하여 公主에게 내려주니 遼瀋 지역이 湯沐이 되어 이로 인해 分省을 두게 되었다. (중략) 무릇 요하 이동의 본국 강역 안에 있는 백성과 大小 頭目들은 속히 와서 조회하여 함께 爵祿을 누리도록 하라.⁶⁵⁾

위의 기사는 공민왕 19년(1370) 요동의 東寧府를 정벌할 때 金州 復州 등의 주민에게 포고한 글의 일부이다. 당시 고려군은 황초령을 넘어 압록강을 건넌 뒤⁶⁶⁾ 동녕부로 진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요하의 동쪽이 고려의 고유 영토라고 한 것, 그리고 요동과 고려가 본래 하나의 권역이라고 한 것이다.⁶⁷⁾ 이 주장은 기자의 분봉 지역이 요하 동쪽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종대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제시하면서 역시 기자의 분봉을 내세웠다. 근거 사적은 동일한데 그 기준은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이는 물론 고구려 영토를 염두에 두고 기자의 분봉 지도 요하 동쪽으로 재설정된 결과이다.

65) 『高麗史』 권114, 列傳27 池龍壽, “本國 與堯並立 周武王封箕子于朝鮮 而賜之履西至于遼河 世守疆域 元朝一統 釐降公主 遼瀋地面 以爲湯沐 因置分省 (중략) 凡 遼河以東本國疆內之民大小頭目等 速自來朝 共享爵祿”

66) 『高麗史』 권42, 恭愍王 19년 정월, “甲午 我太祖以騎兵五千 步兵一萬 自東北面 踰黃草嶺 行六百餘里 至雪寒嶺 又行七百餘里 甲辰 渡鴨綠江”

67) 당시 기사를 보면 이 원정으로 인해 “東至皇城 北至東寧府 西至于海 南至鴨綠 爲之一空”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압록강을 南限으로 한 요동 지역에 대한 공간 인식을 보여주며, 이곳이 모두 비었다는 것은 기존에 요동을 지배하던 권력이 물러나면서 고려가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을 표상한다.

이처럼 요하가 고려의 영토 범위로 부각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압록강이 고유 영토의 경계”라는 기존의 관념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외교적으로 오랜 기간 표방되던 것이어서 갑자기 그 내용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실제 경계인 요하를 압록강으로 간주하면 압록강을 경계로 한 전통적 인식과 현실의 요하 경계 인식이 양립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南平壤이다.⁶⁸⁾ 남평양은 고구려 도읍인 평양 외에 현 서울 지역에 있었다는 또 하나의 평양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남방 경영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고려의 영토의식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신라 이래로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 경계에 대한 인식은 “平壤已南 百濟土地”였다. 671년 문무왕은 자신의 행보를 힐난한 薛仁貴에 보낸 답서, 이른바 「答薛仁貴書」에서 당 태종이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후 “평양이남 백제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을 내세우며 자신의 영토 권리를 주장하였다.

“평양이남 백제토지”에 대해서는 신라의 ‘통일’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것은 명확히 “평양 이남이 곧 백제 토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백제가 자국의 영토 범위를 溟江(溟河) 내지 평양으로 설정한 것을 채용한 것이다.⁶⁹⁾ 이러한 역사성은 견훤이 공산 전투에서 고려군을 격파한 뒤 왕건에게 보낸 글에서 “평양의 누각에 활을 걸고 폐강의 물로 말을 먹이겠다”⁷⁰⁾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백제의 고토를 수복하겠다는 의미이다.

68) 南平壤의 실체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구려 ‘南平壤’의 실체와 출현 배경」, 『서울과역사』 95, 2017 참조.

69) 윤경진,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②.

70) 『高麗史』 권1, 太祖 10년 12월, “所期者 掛弓於平壤之樓 飲馬於溟江之水”

그런데 이를 따를 경우 고려는 구 백제 내지 신라 영토에서 건국한 것이 된다. 이는 거란의 침공 당시 소손녕이 주장한 것처럼 고려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이에 고려는 고구려의 남방 영토를 한강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고구려가 실제 한강까지 영토로 확보하였고 자국의 고유 영토로 인식한 것을 계승한 것이다.⁷¹⁾ 서희가 평양 이북을 할양하자는 주장에 대해 “삼각산 이북이 모두 고구려 영토인데 다 내줄 것인가”라고 반박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⁷²⁾ 『고려사』 지리지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를 한강으로 설명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⁷³⁾

그런데 “평양이남 백제토지”는 오랜 기간 영토의식의 준거로 유지되었다. 평양 이북을 내어주자는 할지론은 바로 이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고려는 이 인식과 현실의 경계로서 한강을 양립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한강 북쪽에 평양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평양이남 백제토지”는 현실에서는 한강을 경계로 규정될 수 있다.

요하압록강도 이러한 원리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곧 압록강이 고유 영토의 경계라는 원론을 유지하면서 요하 이동에 대한 영토의식을 수립하기 위해 요하를 압록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평양이남 백제토지”와 한강 경계가 양립하는 것처럼 압록강 경계와 요동 영유권이 양립하게 된다.

그렇다면 고려는 언제부터 이러한 인식을 수립했을까. 전술한 것처럼 금에 사대하는 상황에서 고려는 요동과 자신을 분리시켰으므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시기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리고 『삼국유사』

71) 고구려의 남방 영토범위와 이에 따른 고구려와 고려의 영토의식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 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학연구』 80, 2020③ 참조.

72) 『高麗史』 권94, 列傳7 徐熙, “且三角山以北 亦高句麗舊地 彼以谿壑之欲 責之無厭 可盡與乎”

73) 『高麗史』 권56, 地理1 楊廣道, “漢江以北 高句麗 以南 百濟”

에 요하압록강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부각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영토의식이 전환되는 계기로 몽골의 고려 지배가 주목된다. 몽골이 금을 공멸하고 고려 또한 몽골과 오랜 전쟁을 치른 후 원의 체제로 편입되었다. 이 상황은 역설적으로 고려의 요동 영토의식을 되살리는 전기를 제공하였다.

금의 몰락은 고려의 요동 영유권을 제약하던 지배력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였다. 고려가 요동 영유권을 재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려와 요동 모두 원의 영역에 포괄되었고, 그동안 고려와 요동을 나누던 (의주)압록강 경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조건은 과거 고구려 영토였다는 사적을 배경으로 삼아 요동이 본래 고려와 하나였다는 인식을 유도하였다. 공민왕 때 포고문에서 요동이 본래 고려의 영토였다가 공주湯沐邑으로 인해 분리되었다는 주장(자료 거)은 이러한 함의를 잘 보여준다.

충선왕의 언급(자료 하)은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거나 그 단초는 원의 영향을 받게 되는 원종대로 올라간다. 원종 10년 崔坦 등이 반란을 일으켜 서경 이북의 땅을 가지고 원에 투항하였고, 원은 평양에 東寧府를 두어 해당 지역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서경 이북은 고려와 분리되어 요동과 묶이게 되었다. 이후 고려의 계속된 요구로 원은 서경 이북을 고려에 돌려주었고 동녕부는 요동으로 이동하였다.

이 때 고려는 자신의 고유 영토임을 반환의 근거로 내세웠고, 이 과정에서 요동 방면에 대한 영토의식도 재생되었다. 이것은 고려가 趙暉의 반란으로 몽골에 몰입된 쌍성총관부 지역을 무력으로 수복하면서 원에 보낸 글에서 伊板嶺(마천령)까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⁷⁴⁾ 고유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74) 고려말 동북방 영토의식에 대해서는 윤경진, 앞의 논문, 2019 참조.

적극화되면서 그 범위가 과거 사적을 매개로 확장된 것이다. 양자 공히 고구려의 영유를 본원적 준거로 하고 있다.⁷⁵⁾

일연은 이러한 당시의 변화된 인식을 채용하여 『삼국유사』에서 안시성을 고려 도읍으로 정리하고 요수가 압록강이라는 내용도 넣은 것이다. 이 인식은 원 간섭기 동안 지속되었고, 공민왕 때 요동의 동녕부를 정벌하면서 적극 표방되었다.

이처럼 요하압록강은 금의 멸망과 원의 고려 지배를 배경으로 요동에 대한 영토의식을 다시 수립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원종 10년 서경 이복의 몰입과 고려의 반환 요구 과정에서 표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곧 요동에 대한 영토의식이 기존에 외교적으로 누차 표방되었던 압록강 경계 인식과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요하를 압록강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려의 영토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전통적 인식과 “고려의 고유 영토는 요하까지이다”라는 현실의 영토의식이 양립하게 된다.

결국 고려초기 일시적으로 동북면의 용흥강 일원이 압록강으로 간주된 것처럼 요하압록강 또한 고려후기 영토의식의 변동에 따른 역사적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전 시기에 보이는 압록강을 요하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화주압록강이 장성 축조와 함께 경계로서 의미를 잃으면서 사라지는 것처럼, 요동이 명의 영토로 귀착되고 의주압록강이 양국의 경계로 확정되면서 요하압록강 또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⁷⁶⁾

75) 이판령 경계는 예종대 동북 9성 개척을 직접적인 준거로 하지만, 동북 9성은 고구려의 구지라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 인식은 고구려로 소급될 수 있다.

76) 원론적으로 보자면 원 간섭기 압록강 용례 중 요하로 비정될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고려사』 등에서 이 시기에 보이는 압록강은 대체로 의주압록강이다. 실상 요하압록강은 고려 내부의 영토의식에 따라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 지배 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여지는 적었다. 혹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 간섭기 고려의 영토의식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여타 압록강 사례를 요하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현재 알려진 압록강(의주압록강) 외에 자료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압록강 사례에 대해 그 실제 및 출현 배경 등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례를 같은 곳으로 혼동하거나 출현 이전으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초기 동북방 경략 과정에서 등장하는 압록강은 화주 방면에 있었다(화주압록강). 성종 10년 압록강 밖의 여진을 백두산 밖으로 내쫓은 기사는 의주압록강을 준거로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압록강-여진-백두산의 공간 배열로 볼 때 이 압록강은 현 함경도 방면에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압록강 연안에 關城을 쌓으려다가 여진의 공격으로 무산된 것 역시 동북방의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고려는 서북방에서 박천강을 넘어 가주 일대에 진출한 수준이었고, 여진과의 접촉도 이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성종 4년 거란의 공격으로 여진이 박주 일대로 유입된 것은 그 반영이다.

성종 13년 이승건을 압강도구당사로 삼았다가 얼마 후 하공진으로 교체한 것도 화주압록강의 상황이다. 당시 고려는 거란과 전쟁을 마무리한 후 강동 6주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성종 13년에는 광주와 귀주가 먼저 축성되었고, 이듬해 홍화진을 쌓았다. 하공진은 동여진을 공격했다가 패배한 일이 있었고, 현종 원년 유종이 來朝하는 동여진 무리를 죽인 사건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하공진 열전에는 ‘東西界’에 있을 때 여진을 함부로 공격했다가 뒤에 연좌된 내용이 있어 이것이 압강도구당사로 재임할 때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선종 5년 거란에 樵場 혁파를 요청하며 보낸 표문에서는 하공진의

구당사 활동을 의주압록강 방면으로 적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압록강 동안에 대한 고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前史를 활용한 것으로서 고려에게 유리하게 고쳐 해석한 것이다. 낮에는 압록강 연안을 순찰하고 밤에는 內城에 들어왔다는 것은 당시 의주압록강 방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공진 열전에서 '東西界'라고 한 것은 그가 동여진을 공격한 것과 표문의 내용을 아우르기 위해 구성한 표현이다.

고려가 영토와 관련된 표문에서 과거의 사적을 자의적으로 구성한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삼국유사』의 고구려 항목에는 卒本을 和州나 成州로 비정한 견해를 소개하고 비판했는데, 성주는 평양이 주몽의 창업지로 설정되고 그와 경쟁한 송양의 사적이 성주에 비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곳의 비류강을 졸본천이라고도 한 것은 그 산물이다. 당초 졸본은 비류수 인근에 소재하며, 이 비류수는 압록강에 해당한다.

고려는 광종대 송과 외교를 전개하면서 '압록강'까지 고려의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이것이 동북방에도 적용되어 (화주)압록강이 설정되었다. 성종대 이후 진행된 동북방의 축성은 화주압록강을 관방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려가 장성을 쌓아 영토를 확정하면서 남쪽에 자리한 화주압록강은 경계 지표로서 의미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그 명칭도 소멸하였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고구려 때 불교의 전래와 관련하여 安市城에 도읍했다는 기사와 성이 소재한 요하에 대해 “遼水一名鴨濛”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이를 준거로 고려전기 압록강을 요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기사는 불교 도입 후 도읍에 창건된 사찰에 대한 고증을 담은 것인데, 당시 도읍은 국내성이었다. 여기에 인용된 『승전』은 이를 서경으로 오인했는데, 이는 고려가 주몽의 창업지를 평양으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압록강가의 도읍”을

안시성으로 이해한 것은 경계 인식의 확장에 따른 것으로서 영토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협상에 나선 서희는 고구려 계승을 명분으로 요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영토 협상은 압록강 경계로 타결되었고, 강동 6주는 거란의 사여로 명분화되었다. 이에 맞추어 고려는 자신의 영토의식을 압록강으로 제한하였다. 박인량이 지은 표문에도 압록강을 경계로 삼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이것은 금에 사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인종 3년 표문에서 “平壤의 舊墟는 鴨綠에 한정되고 句麗의 本地는 遼山이 중심이다”라고 한 것은 고려의 고유 영토가 압록강을 경계로 하며, 요동의 고구려 사적은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런데 고려가 원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영토의식이 달라지게 되었다. 충선왕은 태조의 뜻이 압록강을 넘어 “東明舊壤”을 수복하는데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원 간섭기 고려가 요동 영토의식을 다시 표방하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향은 공민왕대 東寧府 정벌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당시 포고문에서 고려는 동국의 역사가 堯와 함께 시작되었고 기자가 분봉된 땅이 서쪽으로 요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곧 “요동이 고려의 고유 강역[遼河以東 本國疆內]”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압록강 경계’는 외교적으로 오랜 기간 표방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부정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조건에서 요하를 압록강으로 간주함으로써 압록강 경계 인식과 현실의 요하 경계를 양립시켰다.

이 원리는 南平壤의 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이래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는 ‘평양이남 백제토지’가 기본이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한강까지 영토로 확보하였고 이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간주하였다. 고려는 이를 계승하여 고구려의 남방 경계를 한강으로 이해했는데, 이를 ‘평양이남 백제토지’와 양립시키기 위해 한강 북쪽에

평양, 곧 남평양을 설정하였다. 전통적 영토 기준과 새 지표를 결합시키면서 동일 지명을 적용한 점에서 요하압록강은 남평양과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요동을 지배하던 금이 멸망한 것은 고려가 이에 대한 영유권을 재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고려가 원의 체제에 편입되며 그동안 고려와 요동을 나누던 국경으로서 압록강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충선왕의 언급이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이러한 인식이 원 간섭기 초기에 수립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결정적 계기로는 원종 10년 최탄의 반란으로 서경 이북이 원에 몰입되어 동녕부가 설치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경 이북이 요동과 한 권역으로 묶이게 되었고, 몰입된 지역이 고유 영토임을 내세우며 반환을 요구하던 고려는 요동 지역에 대해서도 영토의식을 재생하였다. 영토 반환과 함께 동녕부가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그러한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고, 이는 공민왕대 동녕부 정벌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후 요하압록강은 요동이 명의 영토로 귀착되면서 소멸하였다. 이는 화주압록강이 장성 축조와 함께 경계로서 의미를 잃으면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결국 요하압록강은 원 간섭기 고려 영토의식의 한 표현이며, 따라서 왜 그런 인식이 출현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것을 이전 시기에 소급 적용하여 역사상을 설명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원고투고일 : 2020. 11. 30, 심사수정일 : 2021. 1. 7, 게재확정일 : 2021. 1. 12.)

주제어 : 鴨綠江, 화주압록강, 龍興江, 遼河, 요하압록강, 영토의식

<참고문헌>

- 金庠基, 「丹寇와의 抗爭」, 『國史上의 諸問題』 2, 1959
- 김순자, 「10-11세기 高麗와 遼의 영토 정책 : 압록강선 확보 문제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2006
- _____, 「12세기 고려와 여진·금(金)의 영토 분쟁과 대응」, 『역사와 현실』 83, 2012
<http://uci.or.kr/G704-000054.2012..83.013>
- 남의현, 「중국의 中朝邊界史를 통해 본 한중국경문제 : 중조변계사에 대한 비관과 14세기 이전 ‘鴨綠水[鴨綠江]’ 위치 재고」, 『인문과학연구 (강원대)』 57, 2018
<https://doi.org/10.33252/sih.2018.06.57.25>
- 朴賢緒, 「貴族政權의 對外政策 :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 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 『高麗史』 地理志 北界 州鎮 沿革의 분석과 補正」, 『奎章閣』 37, 2010
<https://doi.org/10.22943/kyujg.2010..37.009>
- _____, 「고려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http://uci.or.kr/G704-000336.2010..109.011>
- _____, 「고려 성종-현종초 북방 개척과 州鎮 설치」 『역사문화연구』 38, 2011
<http://uci.or.kr/G704-000940.2011..38.010>
- _____, 「고려의 건국과 고구려계승의식 : ‘弓裔의 高麗’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68, 2014
<https://doi.org/10.22943/han.2014..68.006>
- _____, 「671년 ‘答薛仁貴書’의 ‘平壤已南 百濟土地’에 대한 재해석 : 백제의 영토의식과 溟河의 새로운 이해」, 『역사문화연구』 60, 2016
<https://doi.org/10.18347/hufshis.2016..60.3>
- _____,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鎮 立碑’ 문제」, 『역사와실학』 61, 2016
<http://uci.or.kr/G704-002032.2016..61.011>
- _____, 「고구려 ‘南平壤’의 실체와 출현 배경」, 『서울과 역사』 95, 2017
<https://doi.org/10.22827/seoul.2017..95.001>

- 윤경진, 「고려 성종대 歷史繼承意識의 전개 양상」, 『한국문화』 77, 2017
<https://doi.org/10.22943/han.2017..77.005>
- _____,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鎭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한국문화』 88, 2019
<https://doi.org/10.22943/han.2019..88.005>
- _____, 「고려 숙종대 南京 설치와 역사계승의식」, 『서울과 역사』 105, 2020
<https://doi.org/10.22827/seoul.2020..105.001>
- _____, 「고려중기 고구려계승의식의 변화와 '句高麗」, 『역사와 실학』 72, 2020
- _____, 「고구려·고려의 영토의식과 한강 : 고구려의 한강이남 영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서울학연구』 80, 2020
<https://doi.org/10.17647/jss.2020.11.81.73>
- 윤한택 외, 『압록과 고려의 북계』, 주류성, 2017
- 이미지, 「고려 宣宗代 權場 문제와 對遼 관계」, 『韓國史學報』 14, 2003
-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の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 연구』 24, 2008
<http://uci.or.kr//704-001262.2008..24.008>
- 李貞信, 「江東6州와 尹瓘의 9城을 통해 본 고려의 대외정책」, 『軍史』 58, 2003
<http://uci.or.kr//G704-001528.2003..48.007>
- 정요근,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진행된 국수주의 유사 역사의 세력 확장」, 『내일을 여는 역사』 70, 2018

(Abstract)

Goryeo's Perceptions of its Northern boundary and the 'Alternative Arok River'

– Verifying the entities of the 'Hwa-ju Arok river' and the
'Yoha Arok River' –

Yoon, Kyeong-jin

The 'Arok' river(鴨綠江), which appeared in the relationship with Jurchen (女眞)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Goryeo dynasty, is the river locating in the northeast. It couldn't be established in the 'Uiju Arok River' that Goryeo expelled led Jurchen toward the northern of the Arok river to outside the Baekdusan Mountain. The Arok river was the boundary that Goryeo agreed on with Jurchen and by applying it to the northeast, the 'Hwa-ju Arok River' emerged as a result. This place is now identified as the upstream of 'Yong-heung river' and was no longer used as it lost the meaning and role of the boundary after the Great wall of Goryeo(長城) was constructed.

Meanwhile, there is a record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三國遺事)』 that 'Yosu(遼水)' was also called as 'Arok(鴨綠)'. After the war between Khitan and Goryeo, Goryeo established the Arok River as the boundary of its own northern territory. However, with the fall of Jin dynasty(金), as Goryeo was reigned under Mongol's authority, the meaning of the Arok river as the boundary was diminished. In response, Goryeo claimed to the perceptions of its own territory about the 'Yodong' district. In order to coexist Yoha(Liao-ho, 遼河) as a new boundary with the existing boundary of the Arok river, Goryeo made the consciousness that Yoha is the Arok river. However this consciousness was extinct when Yodong district belonged to the Ming(明) dynasty.

Key Words : The Aprok river(鴨綠江), Hwa-ju Aprok River,
Yong-heung river(龍興江), Yoha(Liao-ho, 遼河),
Yoha Aprok River, The perceptions of its own territory

